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11.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6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변동없음

○ 총 정원 : 1,288명 (총 정원 내에서 정원조정)

○ 일반직 : 1,282명 / 별정직·정무직 : 5명 / 연구직 : 1명

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변경 후	99% 이상	삭제	1%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6%이상	-
변경 후	100%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6%이내	42%이내	48%이내	4%이상
변경 후	0%	0%이내	0%이내	0%이내	0%이상

○ 연구직공무원 <신 설>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100% 이상

○ 별정직 공무원

구 분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현 행	100%	0%	34%이내	51%이내	15%이상
변경 후	100%	0%이내	30%이내	55%이내	15%이상

라. 직급별 정원표 조정 - 안 제4조 관련 【별표3】

구 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기능직 계	연구직 계
			계	3급~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288	1	1,083	69	1,014		12	192	
변경 후	1,288	1	1,282	69	1,211	2	4	<삭제>	1
증 감	-	-	+199	-	+197	+2	△8	△192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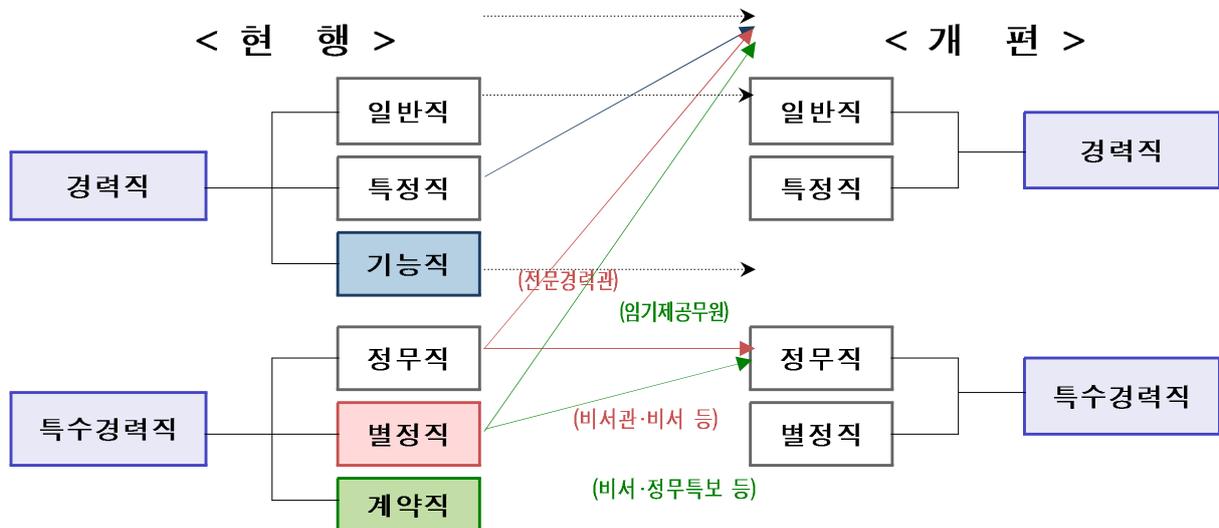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 일부개정, '13.12.12 시행)에 의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간소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개 편 방 안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능직의 경우, 업무특성에 따라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며, 2단계로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 기회가 부여되며, 기존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술직군에 직렬을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됨.

별정직의 경우,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공무원과 관계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 업무성격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지정되며,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 전담직위를 지정하여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되고,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속기' 직렬은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됨.

계약직의 경우, 이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채용당시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 전 환 개 요 】

구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기능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계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계약직	비서관 비서,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조·보좌인력	⇨ 별정직
	그 외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 192명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폐합하고, 1) 별정직공무원 정원 12명 중 7명은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으로,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시키고, 계약직공무원 96명은 임기제 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일반직 정원 : 1,083명 → 1,282명 (증 199명)
- 기능직 정원 : 192명 → 0명 (감 192명)
- 별정직 정원 : 12명 → 4명 (감 8명)
- 연구직 정원 : 0명 → 1명 (증 1명)

1) 별정직 12명(비서 4, 속기 4, 체육지도사 2, 화생방 1, 기록물관리 1) ⇒ 일반직 7명
【행정직군 6(속기4, 체육지도사2), 전문경력관 1명(화생방)】, 연구직 1명(기록물관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1,288명)의 변동없이 기능직은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위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은 폐지하면서 직위의 성격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분류하여 직종별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직종 통합을 통해 소수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될 경우 이들 중, 사무직군의 기능직은 현재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정책 직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 새로운 직무적응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교육과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12.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군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